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□ 서류접수기간

신청 방법 / 당첨자 및 등·호수 발표	당첨자 사전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
• 신청방법 : 인터넷 청약[청약Home] (www.applyhome.co.kr) / 청약통장 은행 구분 없음 • 당첨자 및 등·호 발표일 : 2021.10.21(목)	2021.10.22(금) ~ 2021.10.31(일) (10:00 ~ 16:00) 당사 견본주택 : 강릉시 교동 30번지

※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,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 (방문접수시간 : 10:00 ~ 14:00 은행창구 접수 불가)
 ※ 당첨자 확인 방법 : 한국부동산원 [청약+home](www.applyhome.co.kr) 스마트폰 앱 :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"청약홈" 검색

□ 청약자격 및 요건

- 대상자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(강릉시) 및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)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
- ※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
-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자녀 3명 이상(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)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하며,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
- ※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(규칙 제40조 3항)
- ※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.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다자녀가구특별공급 운전자침」 관련 법령에 의한
- ※ 경쟁시 강원도(기타지역)거주자보다 강릉시(해당지역)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한다.

□ 구비서류 [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.09.30. 이후 발행분]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대상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공동 서류	0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형태로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	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현재 까지로 설정
	0	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
	0	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	• 인터넷 청약(청약 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0		복무 확인서	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0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0		국내거소신고증		배우자
0		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	
0		가족관계증명서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]		
	0		기본증명서	자녀	•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(등본 미기재시)
다자녀 가구	0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	-	• 당사 견본주택 비치, 신청자 본인 점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
	0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여성가족부의 『한부모가족 지원법』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0		혼인관계증명서		•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		•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0		임신진단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) /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
	0		입양관계 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0		출산이행 확인각서	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0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 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주소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	
대리인 제출시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	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대리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발급 서류에 한함)
	0	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0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부적격	0		부적격 소명서류	본인	•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임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30)이후 발생분에 한함
 ※ 상기 서류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 ※ 서류접수 및 계약이후라도 주택소유 등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시행 2020.09.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,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